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391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일, 김혜련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2. 4. 13.

판결 선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9.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595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6. 'D은 2020. 2. 28.까지 원고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한다. D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20. 2. 4. 확정되었다.

나. D은 2019. 4.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 지급

계약금	삼천만원(₩30,000,000)	2019년 4월 20.일
중도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2019년 5월 20.일
잔대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2019년 6월 10.일
계	삼억원(₩300,000,000)	

2.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군 E의 소재지에 있는 1) D이 사용하는 성형기 1대

2) D의 생산제품 약 사만장(규격 : 300mm*600mm)

3) 위 소재지에 있는 D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치구, 공구, 기타 및 모든 물품 전부는 매매계약금에 포함한다.

4) 1), 2), 3), 4)항은 2019년 6월 10.일부터 D이 피고에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다. 피고는 2019. 6. 10. 경남 창원군 E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D은 2019. 6. 17.

폐업신고 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카단211호로 '창녕군 E의 공장 부지에 보관 중인 친환경 황토보드 약 7만장 및 황토보드 제작 유압기계'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5.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9. 8. 12. 경남 창녕군 E에 소재하는 황토보드(1파렛트 153박스) 100파렛트, 유압기계 3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마. 한편, F는 2017. 6. 8.부터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아래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2021. 10. 7.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64호). F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2. 3. 24. 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21노2704호), 위 판결은 2022. 4. 1. 확정되었다.

F는 2019. 6.경까지는 경남 창녕군 E에서 D을, 2019. 6.경 이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황토 보드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F는 2010년경 원고로 하여금 거제시 G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억 2,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14.경부터 2019. 3. 5.경까지 원고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9,2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는 원고로부터 계속해서 채무 독촉을 받게 되고 원고가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기미가 보이자, F는 피고를 설립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D 소유의 친환경 황토보드 약 7만장 및 황토보드 제작용 유압기계 1대의 소유권을 피고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0. 피고를 설립하고 그 무렵 'D 소유의 기계 및 설비, 생산제품을 피고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황토보드 7만장 및 유압기계 1대의 소유권을 피고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F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D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고 D 소유인 위 황토보드와 기계의 소유권을 피고로 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위 황토보드와 기계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인 F가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4. 20.경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인테리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이 그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액인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가 D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피고가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D과 피고의 설립 목적이 '친환경건축자재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및 시공업' 등과 '황토보드제작업'으로 유사하고 그 본점 소재지가 경남 창원군 E로 동일하다.
- ② D의 대표이사는 F, H이고, 그 사내이사로는 F의 처인 I 및 C, H이 있었는데 C, H은 2019. 5. 23. 사임하고 2019. 5. 24. 그 사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9. 6. 10. H이 취임하였고, 그 사내이사로 I, C 및 J이 있어 그 인적 구성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③ D은 원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던 도중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9. 6. 17.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9. 6. 10. 설립되었다.
- ④ 실제로 D이 보유 중이던 유체동산 일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 이전되었다.
- ⑤ F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고 D 소유의 황토보드 등을 피고로 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아영